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50976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3. 체결한 증여계약은 27,136,71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136,7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7,136,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원고는 위 27,136,718원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장찬

별지